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제218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인원정수	15 인	2 인
재적임원	15 인	2 인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3. 4. 14.		

1. 일 시: 2023년 4월 26일(수) 오후 4시 30분

2. 장 소: 속초중앙교회 회의실

3. 개회예배: 임준태 이사장의 사회로 권오선 이사의 기도 후 이사장의 설교, 주기도로 개회예배를 마친다

4.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인원

-이사(12인) : 권오선, 남택률, 류철배, 문성욱, 서진선,
신은수, 이봉석, 임준태, 정창환, 최원준,
최홍진, 황세형

-감사(1인) : 박창수

○ 결석인원

-이사(3인) : 곽균용, 이전호, 최상민

-감사(1인) : 풍석

5. 개회선언: 성수가 되므로 이사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6. 전회의록 낭독: 서기 이사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반기로 결의하다.
(동의 : 권오선 이사, 재청 : 서진선 이사)

7. 절차보고(회순체택): 이사회 서기가 절차를 보고하니 임시보고로 반기로 가결하다.
(별지: 이사회 순)

(동의 : 문성욱 이사, 재청 : 신은수 이사)

8. 알 건

1) 보고사항

(1) 학사보고

(2) 감사보고

		박 창 수
--	--	-------

2) 토의사항

- (1) 2022년도 법인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
- (2) 2022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
- (3) 교직원인사의 건
- (4) 법인임원(개방감사) 선임의 건
- (5) 정관개정의 건
- (6) 기타 안건

9. 회의내용

1) 보고사항

(1) 학사보고

최홍진 총장이 학사보고 하니 유언불파 더불어 구두 보고를 받기로 하다.

(2) 감사보고

박창수 감사의 감사보고는 서면대로 받기로 하다. (별지:감사보고서)

2) 토의사항

(1) 2022년도 법인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

2022년도 법인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은 재정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후,
2022년도 법인비회계 결산액 961,853천원을 원안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동의 : 황세형 이사, 재청 : 권오선 이사)

(2) 2022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

2022년도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은 재정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후,
2022년도 교비회계 결산액 9,457,766천원을 원안대로 받기로 결의하다.

(동의 : 권오선 이사, 재청 : 황세형 이사)

최홍진	박창수	박창수
-----	-----	-----

(3) 교직원인사의 건

제217차 이사회(2023.02.03.)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교직원 임용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서기, 총장에게 위임 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교원 신규임용:

총장이 제청하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한 바,

조영석(비정년, 조교수, 사회복지학, 2023년 3월 1일~2025년 2월 28일(2년))

최영미(비정년, 조교수, 재즈작곡, 2023년 3월 1일~2025년 2월 28일(2년))

황태용(비정년, 조교수, 작곡,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9일(1년))

신은정(비정년, 조교수, 성악,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9일(1년))

조경미(비정년, 조교수(학생상담센터 연구원), 상담학,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9일(1년)) 등

신규임용의 건을 보고 받고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동의 : 최봉석 이사, 재청 : 신온수 이사)

2. 교원임용 위임

< 위임 사항 >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교직원 임용 관련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장과 이사회서기, 총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되 추후 이사회에서

허락하기로 하다.

(동의 : 이봉석 이사, 재청 : 서진선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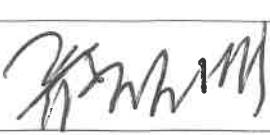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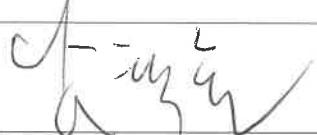
(4) 법인임원(개방감사) 선임의 건

2023년 4월 22일자로 임기만료하는 개방감사 최봉윤 감사 후임으로

개방감사추천위원에서 추천한 김영종씨를 감사로 투표결과 만장일치

가결하다.

(동의 : 황세형 이사, 재청 : 이봉석 이사)

		박 창 수
---	---	-------

(5) 정관개정의 전

정관개정의 전은 정관 신구문대조표(제1조(목적), 제4조(주소), 제5조(정관의 변경), 제11조(세계 임여금의 처리), 제12조의 2(예·결산 보고와 공시),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제20조의 5(추천위원회의 구성),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제24조(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제26조(임원의 결직 큐지), 제27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등), 제30조(이사회 의 소집), 제30조의 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제31조(이사회 소집 특례), 제33조(해산), 제34조(잔여 재산의 귀속), 제36조(임명), 제36조의 3(교원인사규정), 제38조(휴직의 사유), 제42조(직위해제 및 해임), 제44조(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큐지, 의원면직의 제한), 제4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제4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5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제56조(징계의결의 기한), 제58조(위원의 기피 등), 제59조(징계의결 요구 사유 통지), 제61조(징계의결), 제63조(징계사유의 시효), 제73조(총장 등), 제74조(대학원장), 제68조의 1(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제68조의 2(사무직원징계의결의 재심의요구), 제68조의 3(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82조(청렴의무), 제83조(행동강령))와 같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동의 : 신온수 이사, 재청 : 권오선 이사)

(6) 기타 안건

10. 회의록채택

이사회 서기이사가 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동의 : 권오선 이사, 재청 : 최원준 이사)

11.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서명자로 류철배 이사, 남택률 이사, 박창수 감사로 선임하기로 가결하다.

(동의 : 이봉석 이사, 재청 : 황세형 이사)

류철배	남택률	박창수
-----	-----	-----

12. 폐회선언 : 이상과 같이 결의하고 남택률 이사가 폐회 동의한 후 임준태 이사장 기도로 폐회하니 5시 30분 이었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이사장 : 임준태

이사 : 권오선

이사 : 남택률

이사 : 류철배

이사 : 문성육

이사 : 서진선

이사 : 신은수

이사 : 이봉석

이사 : 정창환

이사 : 최원준

이사 : 최홍진

이사 : 황세형

감사 : 박창수